

광주지방기상청 종합감사 결과(요약)

【 2023. 3. 29.(수) / 감사담당관 】

1 감사 개요

□ 목적

- 광주지방기상청의 예산집행, 인사운용, 예·특보 및 기상정보 생산, 방재기상업무, 기상관측, 대국민서비스 등 업무 전반 점검
- 문제점을 도출·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관할 지역의 방재업무 등 기상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

□ 근거

- 「기상청 자체감사 규정」 (기상청훈령 제1023호, 2021. 10. 13.)
- 2022년도 자체감사운영 기본계획(감사담당관-890, 2022. 3. 2.)

□ 대상기관 / 범위

- 대상기관: 광주지방기상청(목포기상대 포함)
- 대상범위: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

□ 감사 기간 및 인원

- 감사 기간: 2023. 2. 6.(월)~2. 17.(금), 10일간
- 감사 인원: 감사담당관 외 6명

□ 중점사항

- 예·특보 및 기상정보 생산과 방재업무 수행의 적정성
- 기상관측업무 및 관측장비 운영의 적정성
- 지역 기상기후서비스 및 기상과학관 운영 실태
- 인사 복무,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, 시설물관리의 적정성
- 각종 연구용역, 위탁용역 등 사업 실태 등

2

감사 결과

□ 감사처분 총괄표

구분	징계	경고	주의	시정	개선	통보	계	모범 사례
건수 (처분요구)	-	1 (부서 1)	5 (부서 5)	3	1	2	12	2

□ 감사처분 목록

번호	제 목	처분요구	관련 부서
1	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운영 미흡	부서주의 개선	○○과
2	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소홀	시정	○○과 ◇◇과 ◆◆기상대
3	통신 요금 납부관리 부적정	시정 부서경고	○○과
4	예·특보 사후분석 지연	부서주의 통보	□□과
5	특이기상 현상 및 극값 경신 분석 미흡	부서주의	□□과
6	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하자검사 부적정	부서주의	○○과
7	연구용역과제 점검 및 평가 절차 관리 미흡	통보	△△과
8	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	부서주의	○○과 ◇◇과
9	무체재산 등록·관리 미흡	시정	○○과

□ 모범사례

번호	제 목	모범부서
1	「탄소중립으로 가는 길, 1.5도시」를 통한 대국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	기후서비스과
2	광주·전남 지역 맞춤형 방재기상업무 프로세스 개선	예보과

3

주요 문제점 및 처분요구

①

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운영 미흡

○○과

【 문제점 】

-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회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면서
 - 결격사유 설정을 공무직 관련 규정이 아닌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으로 잘못 적용(12회)
 -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이 아님에도 결격사유를 설정 및 결격사유 조회 일부 미흡(2회)
 -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을 정성평가 항목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량평가로만 구성함으로써 서류전형의 취지와 다른 결과 발생 가능성
 - 당초 채용계획과는 달리 인정할 수 없는 경력을 인정하거나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등 서류전형 운영 부적정(2회)
 - 최종합격자의 경력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미흡(2회)
 - 최종합격자에게 제출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(1회)

【 처분요구 】

-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(주의)
-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를 설정하고 채용계획에 부합되게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개선 운영 (개선)

②

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소홀

○○과

◇◇과

◆◆기상대

【 문제점 】

- 「건축법」 제20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컨테이너 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함
- 광주지방기상청은 관측장비 운영 및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청사 및 관할구역에 가설건축물을 17개(컨테이너하우스 3, 스틸하우스 14)설치하여 운영
 - 그런데 그중에 1개를 제외한 16개 가설건축물에 대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 누락하여 벌금 등 불이익 우려

【 처분요구 】

-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 신고 촉구 (시정)

③

통신 요금 납부관리 부적정

○○과

【 문제점 】

- 기획재정부의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고,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
- 그런데 용도가 없어진 유선전화(23회선), 상용인터넷 서비스(1회선), 업무용 스마트폰(3대)을 해지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통신서비스의 기본요금을 계속 납부하여 예산 낭비 초래
 - 유선전화 23회선에 매월 112,530원, 연간 1,350,360원
 - 상용인터넷 1회선에 월 27,790원, 58개월('18.4.~'23.1.) 동안 1,611,820원
 - 스마트폰 3대에 매월 135,470원, 연간 1,625,640원

【 처분요구 】

- 용도 소멸된 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, 전신전화가입권이 있는 14개 유선전화의 보증금액 총 2,668,000원을 KT에 반환 청구하여 국고에 세입조치 (시정)
- 통신서비스 요금 납부 시 사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 및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경고 (경고)

④

예·특보 사후분석 지연

□□과

【 문제점 】

- 「예보업무규정」 제33조(사후분석)에 따라 예보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특보와 예보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해야 하며, 특보 사후분석은 익월 20일까지, 단기에보 사후분석은 20일 이내, 특보일지 작성은 16일 이내 실시해야 함
- 특보·단기에보 사후분석 및 특보일지 작성을 과다하게 지연함
 - 특보 사후분석(시·군 기준) 총 789건 중 597건(75.7%) 지연('19.1.~'22.12.)
 - 단기에보 사후분석(시·군 기준) 총 1,331건 중 1,021건(76.7%) 지연('21.1.~'23.1.)
 - 특보일지 작성(시·군 기준) 총 93건 중 46건(49.5%) 지연('21.1.~'22.12.)

【 처분요구 】

-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후분석이 지연되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(주의)
- 특보·단기에보 사후분석 및 특보일지 작성이 기한 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 관리방안 마련 (통보)

⑤

특이기상 현상 및 극값 경신 분석 미흡

□□과

【 문제점 】

- 「예보 및 특보 사후분석 지침서」에 따라 우박 등 특이기상 현상과 관측 이래 극값 1위 경신할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익월 20일 이내에 특별 사후 분석을 해야 함
- 2019년 이후 우박을 13회 관측하고 사후분석을 11회 하였으나 기한 내 분석한 경우가 1회이며, 2022. 3. 3.(지침 개정) 이후 관측 이래 극값 1위를 6회 경신하였는데 사후분석을 한 경우가 없음

【 처분요구 】

- 예보기술 향상을 위한 특이기상 현상 및 극값 경신에 대한 사후분석이 지연 및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(주의)

⑥

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하자검사 부적정

○○과

【 문제점 】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공사에정금액이 1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건설업자와 계약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「정보통신 공사업법」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와 계약을 해야함
 - 수의계약 공사 11건(201,035천 원) 중 2건(35,000 천 원)*은 공사 업무내용과 전문공사 건설업종이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하였고 1건(20,427 천 원)**은 정보통신기술자격만 소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

* 홍보관 제작(시설물유지관리업(x), 실내건축공사업(o)), 방부목 데크 계단(실내건축공사업(x),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(o))

** 차량 자동차단기 설치(무등록(x), 정보통신공사업(o))

- 「국가계약법」에 따라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나
 -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공사 5건(207,434천 원)에 대해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하자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

【 처분요구 】

- 공사 계약 및 하자보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(주의)

【 문제점 】

- 「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」에 따르면, 계약상대자에게 용역과제가 완료되기 15일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용역과제 **평가결과서를 통보**하고 보완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받아야 함
- 기후서비스과는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연구용역과제(5건)를 수행하면서 '19년(1건), '20년(1건), '21년(1건)의 경우 평가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에 있어 전화로 구두전달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**정확한 통보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**, '21년(1건)에는 보완요구사항을 적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자체보고(내부결재)가 **계약종료일 이후에 이루어 짐**
- 그 결과 계약상대자와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**이견 발생 시 증빙자료가 없어** 판단의 기준이 없고 평가결과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여 **최종보고서의 완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**

【 처분요구 】

-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「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」에 따른 절차가 미흡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**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(통보)**

【 문제점 】

-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통신시설 장비와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·감독을 위한 국내출장 여비는 시설장비유지비(210-09)로 집행이 가능하나, 그 외의 공무 수행에 필요한 국내출장 여비는 국내여비(220-01)로 집행해야 함
 -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할 수 없는 **관측시설 환경조사, 관계기관 업무협약의 등 113건('20.10.~'22.12.)의 출장여비를 국내여비가 아닌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**

【 처분요구 】

- 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**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** 관련 부서에 **주의 촉구 (주의)**

【 문제점 】

- 매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용역사업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무체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, **내용연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8년 사업 1건 및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5건에 대한 부대비용인 조달수수료 총 8,624천 원을 무체재산 대장에 누락**
 - ※ 다도해 해양관광산업 지원 융합기상정보 활용서비스 기술개발(2018~2019),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기후 영향정보 생산기법 개발(2020) 등
- 무체재산에 등록된 29회선의 전화가입권 중 4회선*은 처분(2006.12.15.)되었고, 현재 결번으로 확인(2023. 2. 현재)되었으나, **기 처분된 무체재산(전화가입권, 968천 원)을 정리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 소홀**
 - * 061-519-0012, 061-519-0016, 061-519-0017, 062-528-1854

【 처분요구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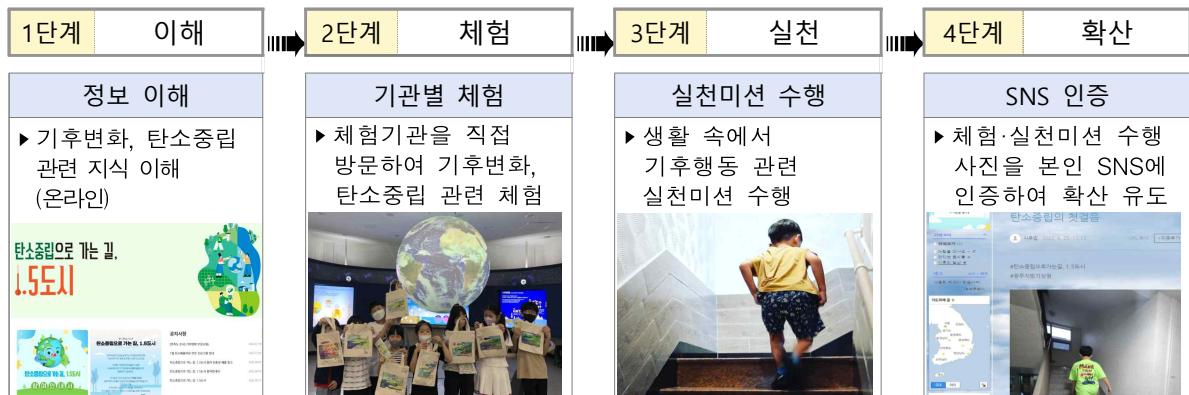
- 누락된 부대비용을 해당 자산의 가액에 합산하고, 처분된 자산(전화가입권)이 관리될 수 있도록 무체재산 관리 및 대장 정리 (시정)

1. 추진배경

-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민적 동참 필요 및 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필요

2. 추진내용

- (국민소통 프로그램 기획)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쉽고 재미있게 공감하고, 생활 속에서 탄소감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기획('22. 2.)
 - 기후변화 편(6월), 탄소배출저감 편(7월), 탄소흡수원 편(8월) 총 3개 시리즈
- (관계기관 협업체 구성) 지역 내 기후변화·탄소중립 관련 분야 8개 기관 협업체 구성 및 협력방안 논의('22. 2.~5.)
 - ※ 광주지방기상청, 담양군, 한국환경공단, 한국에너지공단, 국립공원공단,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, 광주에너지파크, 전라남도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
- ('탄소중립으로 가는 길, 1.5도시' 운영) '이해▶체험▶실천▶확산'의 단계를 통해 참여자가 직접 탄소감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2,152명 체험 참여 및 온라인 인증을 통한 총 902회 확산('22. 6.~8.)



3. 주요성과

- (만족도 조사) 응답자의 93%가 프로그램에 만족, 98%가 기후변화·탄소중립 이해에 도움, 전원이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다짐함
- 다양한 체험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고,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실천 계기 마련
-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 운영, 예산 절감, 홍보 시너지효과 창출 및 지역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

1. 추진배경

- (배경) 위험기상 피해 예방을 위해 방재기관과의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, 수요자의 대처 행동으로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생
- (목적) 위험기상 연계 방재업무 프로세스를 광주전남 지자체와 통합적으로 점검·개선하여 방재 소통의 위험기상 피해경감에 대한 효과성 제고

2. 추진 방향 및 내용

- (방향) 기상청과 지자체 간 방재소통 연계프로세스 개선
- (내용) 위험기상 사례 피해요인 식별 및 기관 역할 개선안 발굴

3. 주요 추진내용

- 現 방재업무프로세스 진단
 - 방재 관계기관 방문 인터뷰 및 의견수렴(22. 3. 22.~4. 26., 24개소)
 - ※ 근본적인 행동 가이드 또는 공동 대응방안 도출 필요, 지자체 방재담당자의 기상정보 활용 부족 등
- 의견수렴 피드백 및 정책 반영
 - 기상정보 활용을 위한「기상특·정보 가이드북」제작·배포(5.19.)
 - 광주광역시 공동「자연재난 협업 대응 매뉴얼」발간(6.8.)
 -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「방재기상정보 활용 워크숍」(9.22.)
- 방재프로세스 현장 적용 점검을 위한 재방문 소통(8~9월)
 - '22년 위험기상 발생지역 재방문 인터뷰(3회) 및 피드백
- 효과 확산
 - 광주광역시 “공동 매뉴얼” 활용 사례 소개(9.29., '22년 학군관워크숍)
 - 전라남도「자연재난 협업 대응 공동 매뉴얼」설계 합의(11.29.)

4. 최종 개선방안 마련

- (소통 공백 최소화) 방재관계기관 방재기상업무 프로세스 협업 제도화



방재기상업무 프로세스 협업 제도화

- (프로세스 개선 체계화) 자연재난 협업 대응 매뉴얼 제도화 기반의 방재기상업무 프로세스 개선 순환체계 마련으로 기관 간 협력 강화

